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33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2. 25.

발 의 자 : 강선우·맹성규·고영인
정성호·윤관석·김승원
남인순·김진애·허영
이원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서는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여 경찰이 피해 아동의 의사를 물어 변호인을 신청하거나, 검사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음.

그러나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국선변호인 선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여, 지난 2019년 기준 검찰의 아동학대 건수 대비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는 총 7,994건 중 2,855건으로 35% 불과한 실정임.

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,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또한 이를 요구한 바 있음.

이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학대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사로 하여금 국선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고자

함(안 제16조제2항 신설 등).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조 전단 중 “제27조를”을 “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”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피해아동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) 아동학대범죄사 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」 제27조를 준용한다. 이 경 우 “성폭력범죄”는 “아동학대 범죄”로, “형사절차”는 “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”로, “피해자” 는 “피해아동”으로 본다. <u><신 설></u>	제16조(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을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 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피해아 동이 명시적으로 거부의를사 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